

교회지도자 양성 교육원 운영 규정

제정 2017년 8월 24일
일부개정 2019년 12월 3일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건신대학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이라 한다) 학칙 제94조의 ⑰에 규정된 교회지도자 양성 교육원(이하 “교육원” 이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.

- ① 교회지도자 양성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종합계획 및 수립
- ② 교회지도자 양성 교육과정 개발 사업
- ③ 교회지도자 양성 교육과정 자문 및 평가 사업
- ④ 교회지도자 양성 교육과정 관련 교육 지원 사업
- ⑤ 기타 교회지도자 양성 교육과정 지원 업무

제3조(조직) ① 교육원에는 원장을 두며 본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- ②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며, 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교육원에는 교육운영부와 대외협력부를 둔다. <개정 2019.12.03.>
- ④ 교육원의 부장은 전임교원 또는 6급 이상의 직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[신설 2019.12.03.]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회지도자 양성 교육원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.)를 둘 수 있다.

- ② 위원회의 위원 중 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위원 수는 5인 이내로 둔다.
- 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1.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 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3.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재정) 교육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원은 본 대학의 교비 또는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
제6조(보칙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문기관 및 대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.